

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
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고양시의회 의장 이 윤 승



2019년 5월 30일

고양시의회 훈령 제41호

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”을
“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”로, “공무국외여행규칙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사위원회”로, “9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5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,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기능)”을 “(심사위원회의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는 고양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”을 “심사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여행의”를 “출장의”로, “여행자”를 “출장자”로

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여행국과 방문기관”을 “출장국과 출장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여행기간”을 “출장기간”으로, “여행경비”를 “출장경비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여행”을 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”으로, “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여행계획서”를 “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출장계획서”로, “국외여행동행”을 “국외출장동행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위원회 개최·의결 정족수)”를 “(심사위원회 개최·의결 정족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사위원회”로, “과반수의 찬성”을 “3분의 2 이상의 찬성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사위원회”로, “의정팀장”을 “의정담당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[illegible]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</u>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,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, 나머지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한다. <신 설> 제3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. <신 설>	<u>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</u> 제1조(목적) -----「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----- -----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----- -----. 제2조(구성) ① 심사위원회----- ----- 7명 ----- ----. ②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5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,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.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. 제3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②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총괄한다. ② (생 략)	<u>위원회를 구성한다.</u> 제4조(위원의 직무) ① ----- <u>심사위원회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고양시의회위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·의결한다. 1.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.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.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4. (생 략)	제5조(심사위원회의 기능) <u>심사위원회</u> 는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----- 1. 출장의-----출장자----- 2. 출장국과 출장기관----- 3. 출장기간-----출장경비----- 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심사위원회 개최) 심사위원회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, 고양시장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외여행동행 추천 요구가 있을 시에 심의한다.	제6조(심사위원회 개최) ----- <u>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</u> ----- <u>조례 제10조에</u> <u>서 규정한 출장계획서</u> ----- ----- ----- <u>국외출장동행</u> ----- -----.
제7조(위원회 개최·의결 정족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(생 략)	제7조(심사위원회 개최·의결 정족수) ① <u>심사위원회</u> ----- ----- <u>3분의 2 이상의</u> <u>찬성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간사)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	제8조(간사) <u>심사위원회</u> -----

현행	개정안
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의정팀</u> <u>장</u> 이 된다.	----- <u>의정담당관</u> -----.

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□ 제안이유

- 「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「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」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변경함.(안 제2조)
- 나.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함.(안 제6조)
 - “~규정에 의거” → “~규정에 따라”
- 다.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함.(안 제7조)
- 라. 간사를 “의정팀장”에서 “의정담당관”으로 변경함.(안 제8조)